

소방시설 점검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하용우, 이수경*, 박강서**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A Study on The Directions to Improve Fire Inspection System in Korea

Yong-Woo Ha, Su-Kyoung Lee*, Kang-Seo Park**

Dept. of Safety E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1. 서 론

국가경제 규모가 커지고 각종 산업이 발달하므로써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건축물은 대형화, 고층화, 지하화 되고 있다.

또한 전기, 전자, 컴퓨터 산업의 발달로 시설은 점차 복잡 다양화 되어지고,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로 화재의 취약성은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삶의 질 향상으로 인테리어의 고급화 경향과 가연성 물품의 다양 적치로 화재하중은 점차 높아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재를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히 경보하여 소화 피난의 초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될 것이다. 여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안전 관련시설을 유사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유지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상기와 같은 소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 소방에서는 정기·특별 소방검사를 통하여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전기·가스·위험물·화기취급 시설의 안전여부를 확인하여 취약요인을 제거함은 물론 방화관리자 업무제도를 통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있으나, 이는 한시적·강제적 수단에 불과하여 그 능률성과 효과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고 관계자의 자율방화능력을 제고하여 관심을 유도하므로써 스스로 소방안전을 실천하는 계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가 태동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건설적인 제도를 앞으로 더욱 보완 발전시키기 위하여 현 제도의 당면과제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자체점검제도의 법적근거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등)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3. 자체점검 대상 및 점검업체 현황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 등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m²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은 제외한다)로 하되, 아파트의 경우는 연면적이 5,000m²이상이고 총수가 16층으로 소방시설관리사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상 17,928개소를 비롯하여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방화관리자 선임대상 207,379개소, 기타 이에 속하지 않는 특수장소 919,606개소 등 전국적으로 937,534개소가 있다.

이들 특수장소에 대한 자체점검을 할 수 있는 소방시설관리유지업체는 전국에 118개 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소방시설관리사 155명, 소방설비기사 등 950여명에 달하고 있다.

4. 자체점검제도의 변천

소방시설자체점검제도는 1983년 12월 30일 소방법 제29조제3항을 신설하여 최초로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음해 6월 30일 소방법시행령 개정시 제24조의2, 제24조의3을 신설하여 특수장소의 관계자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로 정기적인 점검을 받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매년 10월 말까지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다.

또한 1991년 12월 14일과 1992년 9월 19일 소방법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자체점검을 하거나, 소방시설 전문점검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케 하는 전문점검업 제도를 도입하였고, 점검의 종류·횟수를 줄여 점검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점검결과는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토록 법규를 현실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1994년 10월 27일에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규칙 제29조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써 현재의 자체점검제도가 실시되게 되었다.

5. 현행 법령상 자체점검제도

5.1.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기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에 기술인력연명부,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및 장비명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2 점검결과 등의 보고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하고,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21호 서식의 소방시설점검결과보고서에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3 점검수수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Table 1. The classification, object, qualification of inspector, inspection method, and inspection frequency of the self-inspection check on fire safety facilities

점검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점검회수 및 시기
작동기능점검(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을 제외 한다)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방화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방수 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 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1. 횟수 : 연1회 이상 실시 2. 시기 1) 종합정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2) 그 밖의 대상: 연중 실시
종합정밀점검(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 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 기준에 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m ²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 등을 제외)로 하여는 연면적이 5,000m ² 이상이고 총수가 16층 이상일 것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1. 횟수: 연1회 이상(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방재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부터 2년간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되,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기: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6. 자체점검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점

자체점검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6.1 자체점검 대상의 한정과 불합리성

자체점검 대상을 위 Table1의 대형건축물에만 한정하고 있으나 노약자나 연소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화재 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파트나, 다중이용업소나 재래시장, 여과 등 화재취약 대상물에 대해서는 점검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또 관계인이 동일하고 같은 번지 내 여러 동이 밀집되어 있는 공장, 학교 등도 역시 공정별, 동별 연면적이 5,000m²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자체점검에서 제외되어 있다.

6.2 점검업무 지도·감독부서 부재

자체점검제도와 관련된 정부조직 중 가장 상위라고 할 수 있는 소방방재청에서 소방시설관리유지업체의 점검업무 이행사항을 확인하거나 지도·감독할 법상의 제도적 장치가 없다. 전담부서가 없이 이 제도가 실무에 있어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개선해야 하는 점에 대한 검토 역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6.3 점검인력 부족 및 전문성 결여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점검자의 기술능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규모의 방대성이나 화재취약성을 감안할 때 기술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가 155명으로 기술인력의 수치적 절대부족 뿐만 아니라 점검실무보다는 이론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고, 무자격 보조자나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것 역시 자체점검제도 정착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6.4 시설주 부담 가중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에 의한 자체점검의 실시는 종전 소방공무원에 의한 예방검사 실시 시에 소요되지 않았던 고액의 점검수수료 부담은 물론 자체점검 이외의 특별검사 등 소방기관의 예방검사를 행함으로써 특수장소의 시설주 등관계자 입장에서 볼 때 결코 행정기관의 규제완화나 비용의 경감, 자율점검제도의 이행도 아닐 것이다.

6.5 소방안전의 필요성 및 홍보 부족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도입이후 특수장소 관계인이 자율적으로 자체점검업체를 선정하여 점검용역을 의뢰하는 등 과거에 비하여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개선된 것도 사실이다. 일부 관계인은 점검결과 확인된 문제점이 법적 규제사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필요할 경우 추가비용을 들여서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인들은 아직도 소방안전의식이 부족하여 이에 드는 비용을 비생산적이라고 여기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것은 관계인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안전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미흡한 실정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7. 바람직한 발전방안 제언

이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7.1 자체점검 대상의 재검토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의무대상은 대형 소방대상물로서 자체 소방 기술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방재실·중앙감시실을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보험계약을 신규로 계약하거나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율 산정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의 방화관리 시스템이 우수한 건물로서 화재보험 계약상의 인센티브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에 의한 자체점검을 완화하여 적용하므로서 시설주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또, 화재 안전상 주요 취약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재래시장 등은 화재 시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많은 곳을 자체점검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공설소방조직의 해당 업소 점검에 따른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고 오히려 수시 점검을 통한 화재안전을 강조할 수 있어 화재취약대상의 상황을 보다 세밀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공설소방조직은 구조, 구급 등 들어나는 대민 서비스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어 소방의 3주체가 다 같이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7.2 점검업무 지도·감독부서 확보

대부분 화재 위험도가 높은 대상에 대하여 소방시설관리사에 의한 자체점검을 의무화하면서 이들에 의한 점검업무가 성실히하게 수행되었는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의 확보는 업무를 대행케 한 행정관서로서 당연히 유래되는 귀결이다.

자율방화관리체제의 확립이 소방시설 자체점검업무가 법의 감독기능으로부터 자유로

워지는 목장에서의 방목과 같이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에 의한 점검업무의 성실 이행 여부를 확인·감독을 통하여 불성실한 업체나 관계자를 제재하므로 자체점검제도가 건전하게 육성되고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7.3 점검인력 배출확대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2006년 8월 4일부터 자체점검 실시 시 소방시설관리사의 참여하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 그동안 소방시설관리사 제도 도입 후 기술인력의 절대 부족으로 자체점검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며, 소방시설관리사 사험이 지나치게 난이한 이론적 요소에 치중되어 있고, 소방시설관리사의 주요 임무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사후 점검관리적 임무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 생각할 때 시험과목 일부 변경 내지 점검 실무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이 요구되고, 소방시설관리사의 배출도 그 업무영역을 감안하여 좀 더 많이 배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 더불어 점검자의 기술능력을 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교육과 더불어 정신교육도 병행함으로서 수준 높은 점검으로 양질의 소방점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7.4 시설주 부담 해소

현행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와 관련하여 특수장소 관계자 입장에서는 종전 소방공무원에 의해 행하여지던 소방검사보다 오히려 그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부담면에서도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에 의한 자체점검 이외에 법 규정과는 별도로 소방행정 기관에서 여러 명목 하에 소방검사가 실제 행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관리사에 의한 자체점검 의무대상의 경우에 상당액의 점검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점검에 따른 상식 이상의 점검비용 요구를 방지할 수 있는 점검비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제정도 자체점검제도의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7.5 소방안전의 필요성 및 홍보 활성화

소방안전은 법에 의한 규제만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안전불감증 해소 및 소방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계인의 소방안전 교육은 물론 대중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 강화, 방화환경조성 등의 대국민 홍보가 요구된다.

8. 결 론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 내지는 검사가 소방기관에 의해 실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단체로 이양하여 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의 당장의 판단을 유보하고서라도 특정의 개인소유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소방안전관리를 자율이 아닌 소방기관이라는 타율에 의해 행하여진다는 것은 자율방화체제 확립을 바라는 입장에서 반드시 고집할 이유는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자율방화체제 확립을 대 전제로 하여 소방시설점검제도의 발전방안은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자체점검 실시 대상에 대한 소방검사의 성실 이행을 확보하고,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술인력의 배출 및 점검 실무능력 향상, 자체점검에 따른 관계자의 부담 경감차원에서 점검비용의 일반적 기준고시, 그리고 부실점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일관

성 유지 및 신뢰성 확보뿐만 아니라 소방안전 의식 향상과 인식의 변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오형근,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에 관한 연구-특수장소 중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0).
2. 오형근,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실무행정”, 도서출판 한성문화(2005).
3. 소방방재청,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소방방재청(2005)
4. 소방방재청, “화재통계연감”, 소방방재청(2005)
5. 서울특별시소방방재본부, “화재통계연감”, 서울특별시소방방재본부(2005)
6. 한국소방안전협회, “2급방화관리자 강습교재”, 한국소방안전협회(2006).
7. 제태환, “방화관리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5)
8. 이상구, “소방시설점검제도의 발전방향”, 소방안전 96호, pp10(1997)
9. 홍문관, “소방관계법규”, 홍문관(2004)
10. 이천우, “방화관리자의 업무수행 정도에 관한 연구”, 경기도소방학교(2005)
11. 이상구, “소방점검제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 중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1)
12. www.kfsa.or.kr(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